

#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49,191,000	37,475,730
일반회계	1,113,007,000	33,390,210
특별회계	136,184,000	4,085,520
공기업특별회계	115,714,000	3,471,420
상수도사업	47,634,000	1,429,020
하수도사업	68,080,000	2,042,400
기타특별회계	20,470,000	614,1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314,000	99,4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	1,911,000	57,330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1,284,000	38,520
주택사업	371,000	11,130
주차장설치사업	447,000	13,410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운영관리사업	674,000	20,220
보령댐주변지역지원사업	838,000	25,140
의료급여기금사업	2,092,000	62,760
공공급식지원센터	9,539,000	286,17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2,164,76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4,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이용할 수 있다.

- 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② 지방채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제 6 조 예산의 자원 구분을 위한 약어는 다음과 같다.

국: 국고보조금 / 균: 균특회계보조금 / 기: 기금보조금 / 특: 특별교부세 / 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도: 도비보조금 / 조: 특별조정교부금